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1636호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7.

2. 제안사유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체료 징수, 연체기간별 고정 연체요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단순히 확인·재기재하는 경우 법령 개폐시 동 조례의 개정이 동반되어 입법 경제에 부합하지 않음
-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

기 위해 연체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개정(2022.4.20.)된 바 있으나, 조례 제5조제3항은 개정 전 연체요율로 규정되어 있어 정비 필요

3. 주요내용

가. 실효성 있고, 입법 경제에 부합하도록 상위법령을 적용함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(안 제5조제3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3. 10. 19. ~ 2023. 11. 8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영차고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연체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(이하 “공유재산법” 이라 한다.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법 시행령” 이라 한다.)의 관련 조항을 인용토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 제5조제3항¹⁾ 각 호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를 상위법령인 법 시행령 제80조(연체료의 징수)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있음
- 동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시행령 제80조의 연체료를 부과기준이 '22년 4월

1) 「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사용료)

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1.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12퍼센트

2.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13퍼센트

3.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14퍼센트

4.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: 연 15퍼센트

20일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

※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신구조문대비표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2455호, 2022. 2. 18., 타법개정]	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2601호, 2022. 4. 20., 일부개정]
제80조(연체료의 징수) ① 생략 1.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12퍼센트 2.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13퍼센트 3.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14퍼센트 4.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: 연 15퍼센트 ②·③ (생략)	제80조(연체료의 징수) ① 생략 1.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7퍼센트 2.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8퍼센트 3.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: 연 9퍼센트 4.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: 연 10퍼센트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- 한편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 개정 시 추가적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어야 하며 조례가 신속하게 개정되지 않을 경우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등 행정 신뢰성 저하 및 시민불편이 야기될 수 있음
- 동 개정조례안은 연체료 부과시 상위법령의 조문이 아닌 조항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조문 직접 인용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